

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(서울특별시공고 제2021-1223호)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.

2022년 4월 21일

서울특별시장

1. 지정지역 : 주요 재건축 단지등 4,578,039㎡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합 계			4,578,039	
서울특별시	강 남 구	압구정동	1,149,476	압구정 아파트지구
	영등포구	여의도동	616,034	여의도 아파트지구
	양 천 구	목동	2,282,130	목동 택지개발지구
	성 동 구	성수동1가, 성수동2가	530,399	성수 전략정비구역 (1~4구역)

2. 지정기간 : 2022년 4월 27일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㎡ 초과

4.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별첨

*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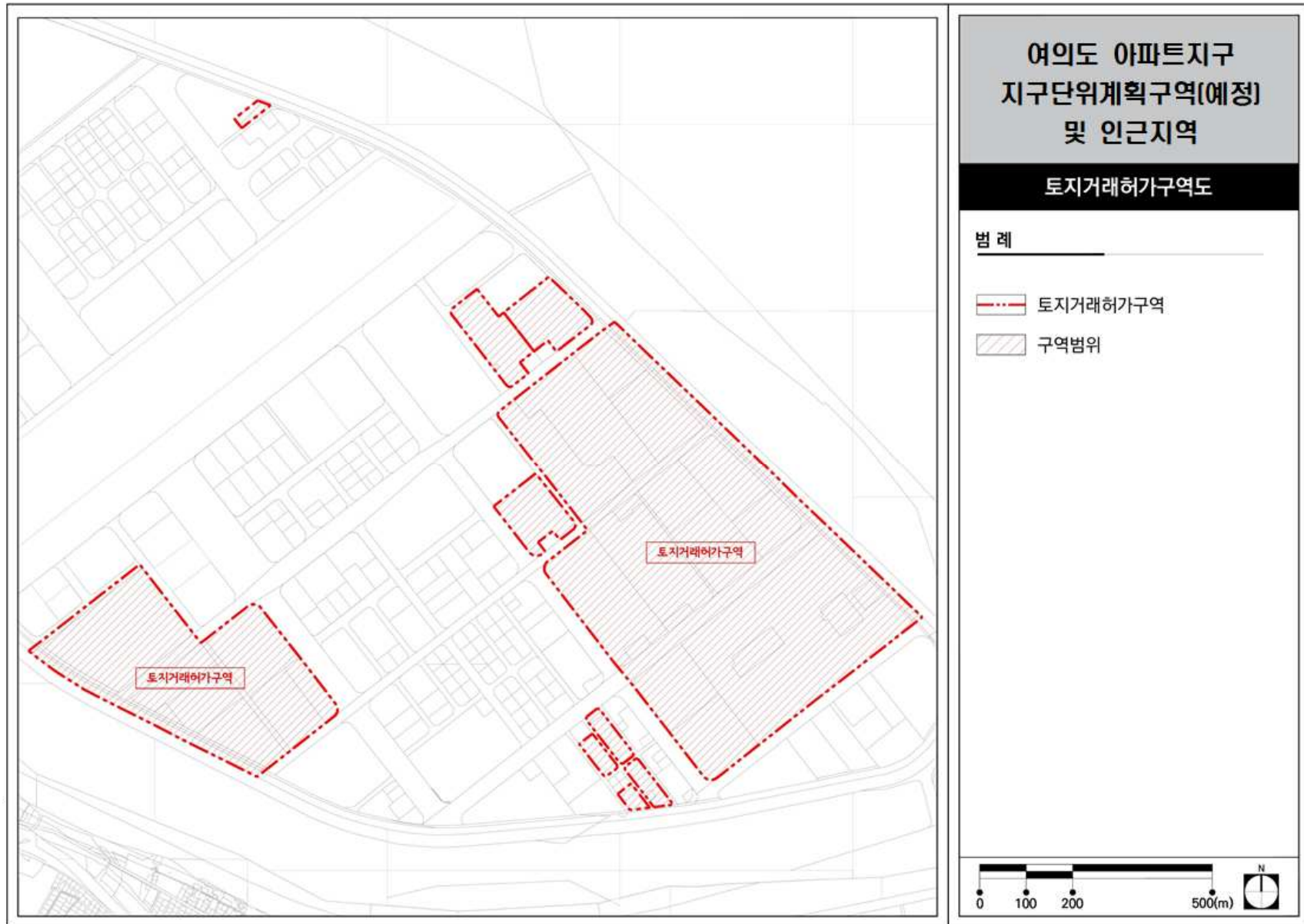
별첨1

지역별 세부 지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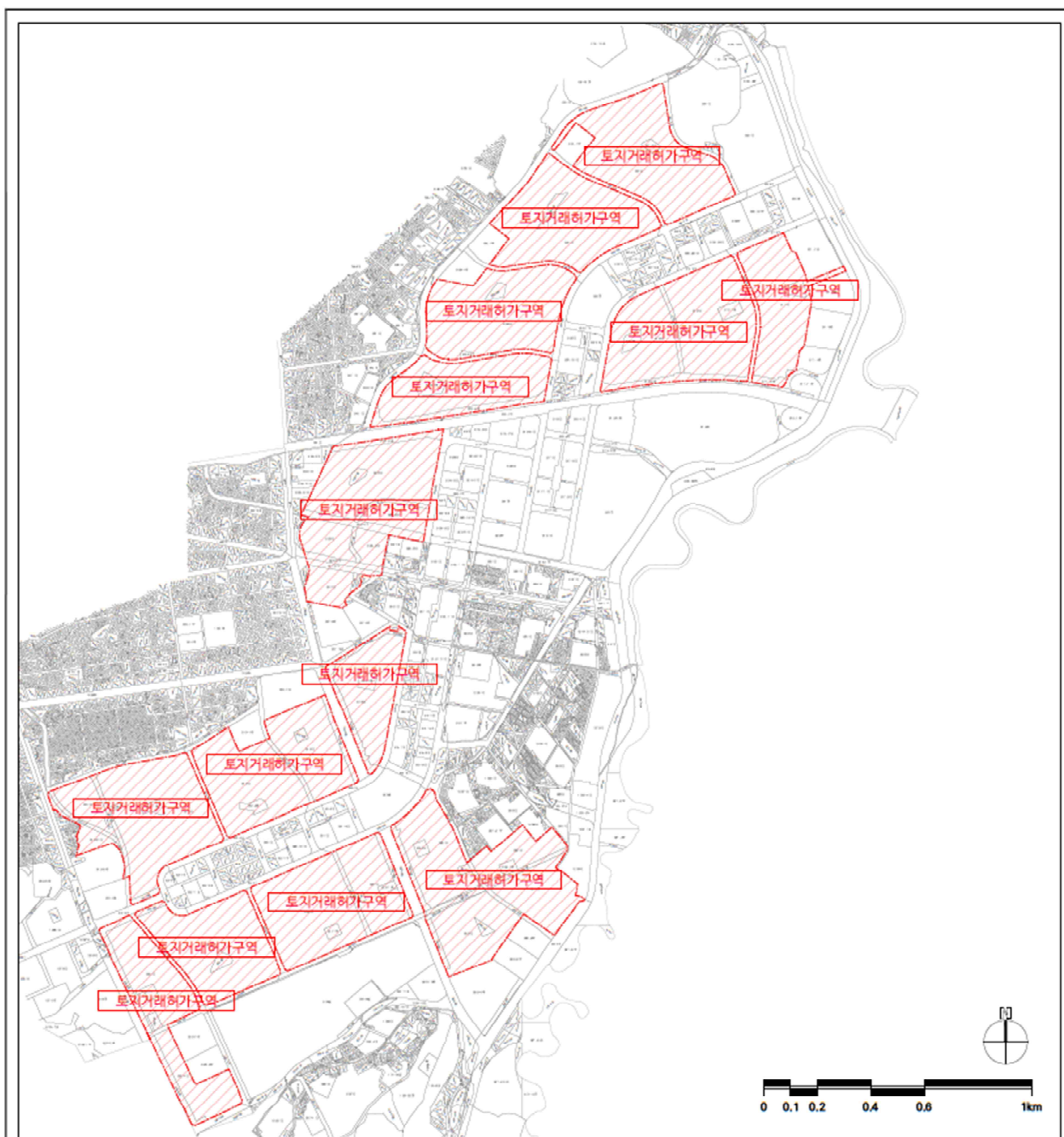
◎ 압구정 아파트지구



◎ 여의도 아파트지구



◎ 목동 택지개발지구



서울목동지구
택지개발사업
지구단위계획구역

토지거래
허가구역도

--- 토지거래허가구역
구역 범위

◎ 성수전략정비구역(1~4구역)

